

문서번호 : 제2018.019호

2018. 06. 07.

수 신 : 대한체육회 체육인복지부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발 신 : 분당 더샵 파크리버 분양사무소  
제 목 : 분당 더샵 파크리버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요청의 건  
참 조 : 담당자 (최명운 이사)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공급하는 "분당 더샵 파크리버" 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급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일원

2.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4층 총 5개동 총 506세대

3. 일정 안내

- ① 견본주택 오픈일(예정) : 2018. 06. 22. (금) 예정
- ② 청약접수 신청일(예정) : 2018. 06. 26. (화) 예정
- ③ 청약 장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http://www.apt2you.com)) 온라인 청약 접수 (08:00분~17:30분)
- ④ 당첨자 발표일(예정) : 2018. 07. 06. (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예정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분양승인 일정 및 접수 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견본주택에서 청약접수를 하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 우수선수

주택형(㎡)	59A	59B	74A	74B	84A	84B	84C	84D	84E	84F	합계
배정 세대	-	-	-	-	-	1	-	-	-	-	1
예비 추천	-	-	-	-	-	1	-	-	-	-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시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공급**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거주요건 우선순위가 계약 또는 서류접수 시 증빙서류와 상이 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 됩니다.

\*배정세대에 대한 추천 및 예비 추천 세대수에 맞게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주체 및 담당자

- ① 시행사 : (주)하나자산신탁
- ② 시공사 : (주)포스코건설
- ③ 담당자 : 최명운 이사(070-8015-4060/sasaju@hanmail.net),(FAX) 031-8016-8142
- ※ 분양문의 : 031-539-0600 , <http://www.bundang-thesharp.co.kr>

6. 대상자 회신

- ① 특별공급 대상자 회신일 : **2018. 06. 20. (수) 12시 까지**
- ② 대상자 통보 :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붙임2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 양식을 사용하여 회신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공문 회신 주소 : (우)463400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50번지 분당 더샵 파크리버 견본주택 (T:031-539-0600) 또는 담당자 이메일(sasaju@hanmail.net), FAX(031-8016-8142) 회신

- ※ 붙 임 : 1. 분당 더샵 파크리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2.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 양식. 끝.

분당 더샵 파크리버 분양사무소장 (직인생략)

# [ 불 임 1 ]

## 분당 더샵 파크리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제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급개요 및 일정

- 위치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분양주택 총 506 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 수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38세대 중 우수선수 특별공급 1세대

주택형(㎡)	59A	59B	74A	74B	84A	84B	84C	84D	84E	84F	합계
배정 세대	-	-	-	-	-	1	-	-	-	-	1
예비 추천	-	-	-	-	-	1	-	-	-	-	1

※ 당첨자 선정시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사전서류 접수일 또는 계약시 증빙서류와 상이 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일정 계획

구분	일자	참고사항
건본주택 개관 예정일	2018. 06. 22(예정)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50번지
특별공급 신청 예정일	2018. 06. 26(예정)	인터넷 접수(건본주택 방문접수 불가)

※ 위 일정 및 계획은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 제3호(국가보훈대상자), 제4호(5.18민주유공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사상자, 참전유공자 등), 제 35조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장애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국외근로자(제36조 제9호) 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특별공급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

### ■ 특별공급 입주자저축(청약자격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를 제외한다], 주택을 특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통장 잔액이 지역별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www.ap2you.com](http://www.ap2you.com))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신 분
- ②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③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신 분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 만원	300 만원	250 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0 만원	600 만원	400 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 만원	1,000 만원	700 만원
모든 면적	500 만원	1,500 만원	1,000 만원

※ 상위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일 경우 하위 면적 포함하여 선택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타입만 신청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과거 해당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 또는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해당첨 제한기간 미경과시 특별공급 청약 불가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의하여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특별공급 등)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철거민, 이전기관종사자 제외)

**■ 행정사항**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건분주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기관에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가능하시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호수 배정) 및 계약불가]

**3. 유의사항**

-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40%로 제한(주택담보대출 보유, 실수요자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저 30%~최고 50% 적용)되며, 기본양 주택의 중도금 대출 보유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 지정기관(금융결제원)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 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 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해당첨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팜플렛 및 문의전화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 오류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불 임 2 ]**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 양식 - 예시**

주택형 (㎡)	NO	유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요건(해당사항 체크)		주소
						성남시 1년 이상	기타	
59A	1	우수선수						
	2							
	예비							
59B	1							
	2							
	예비							
74A	1							
74B	1							
84A	1							
84B	1							
84C	1							
84D	1							
84E	1							
84F	1							

**※ 각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에 맞게 추천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예비추천인 명단도 동시에 추천 바랍니다**